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안전보건 현황 공시 가이드(안)’ 행정예고

2026.11.26

지난 2026. 2. 9. 신설되어 2026. 8.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 등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실적,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시 대상 기업 등은 내년부터 위 조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최근 ‘안전보건 현황 공시 가이드(안)’(이하 **‘본건 가이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본건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링크:**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1100730

본건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단위

사업체(법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장소적으로 분리운영되더라도 하나의 법인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

•사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 소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합산하여 공시

•해외 소재 사업장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동일 그룹 계열사라도 각각 별도의 사업체(법인)인 경우, 각각의 사업체(법인) 단위로 공시

주요 공시사항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 관리 인력

- 본사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전담인력을 합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 선임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의 총 인원수를 기재

•안전보건 전담 조직 유무

-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전담 부서 유/무를 체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운영 사업장 수 및 회의 개최 실적을 기재

주요 공시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전년도에 승인된 산업재해 현황을 입력)

- 사고부상자수, 사고사망자수, 질병이환자수, 질병사망자수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은 제외

•도급사업장에서 발생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자 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경우에 한함

주요 공시사항 ③: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근로자 참여활동

- 예시: (안전점검·패트롤 참여) 근로자 참여 합동점검, 작업 전 TBM활동, 불안전상태 신고 등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활동

- 예시: (사내하도급 적격성 관리) 안전보건관리 수준 정기 평가, 중대재해·법 위반 이력 반영, 협력사 안전관리 상주인력 확보 관리 등

•기타 안전보건 활동

- 예시: (최고경영자 안전활동) CEO 현장 안전점검, 경영층 안전회의 주재, 중대재해 예방메시지 발표

주요 공시사항 ④: 안전보건 투자현황

•인건비: 안전·보건 전담인력 인건비

•안전문화·체계구축: 안전보건 관련 각종 교육 및 모의훈련 비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용 등

•시설·장비 투자: 작업장 및 관리 대상 시설물의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투자비

•보건 관련 투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적 지출

•협력사 지원: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업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의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 관련 지원 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대표업종이 건설업인 경우)

주요 공시사항 ⑤: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산업재해 개요 및 재발방지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계획(일정)을 기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 체크

주요 공시사항 ⑥: 산업안전보건 보고서

•공시항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관련 세부 내용을 작성한 보고서

한편 공시절차와 관련하여 (i) 대상 기업 등은 전년도 안전보건 현황을 4월 30일까지 안전보건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ii) 이같이 등록된 공시내용은 6월 1일부터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공시내용에 대해서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대표자 확인서)도 함께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를 뜻하며,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도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시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 보고서에 작성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는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입

니다.

공시 대상 기업 등이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4항 제1의2호), 대상 기업으로서는 추후 확정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를 숙지하여 공시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입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이 같은 전문성에 기초하여 다수의 기업에 관련 자문, 컨설팅을 비롯하여 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수사대응, 공판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에 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한 대응 업무를 문의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행정예고를 거쳐 본건 가이드의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구성원

진현일
변호사

02-316-2897
hijin@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김태승
변호사

02-316-1771
tskim@shinkim.com

송우용
변호사

02-316-1696
wysong@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